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관광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6개월 연장지원

공항버스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21.3.31.까지)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휴직) 지원 강화

지원수준 상향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90%

9.30.까지 한시적으로 90% 지원

*대규모기업 1/2~2/3 ⇒ 2/3~3/4

지원한도 인상 (우선지원대상기업)

6.6만원/1일 → 7만원/1일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기간 연장

180일 → 240일

*240일 지원기간 연장은 '20년도에 한함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일반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공통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요건	· 유급휴업 3개월 시행 후 무급휴직(90일)	· 유급휴업 **1개월** 시행 후 무급휴직**(30일 이상)**	· 무급휴직(30일 이상)
지원한도	· 평균임금 50% 범위 내	· 일반과 동일	· **월 50만원**
지원기간	· 최대 180일	· 일반과 동일	· **최대 90일**

사업주 훈련지원 확대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240%	→ 300%
지원단가	기준단가의 100%	→ 150%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

기존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확대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포함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3만원/1명 → 면 제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

최대 5년 → 최대 8년



융자한도 상향

임금감소·소액생계비 (만원)

월181 → 월222

그 외 (만원)

월259 → 월317

학자금 융자 확대

고교생 연 5백만원 → 고교, 대학생 연 7백만원



*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한시적('20.3.9.~12.31.)으로
(임금체불생계비 제외) 융자 소득요건을 월 388만원으로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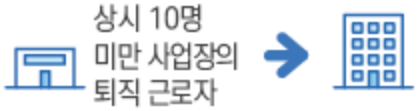
2천만원 → 3천만원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대상 확대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강화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0~20%**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 요건 완화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요건 면제**

훈련연장 급여 지급 요건 완화

기술자격증 소유 등 4개 요건 충족 → **직업훈련을 받으면 재취업**하기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